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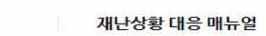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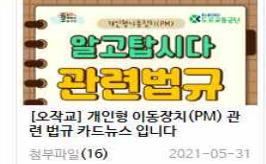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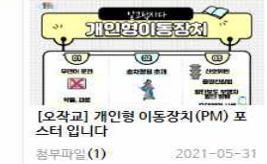
최근 언론 보도*에 따르면,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 교육이 필요하므로 학교에서는 **개인형 이동장치(PM)에 대한 안전 수칙 교육 등 교통 안전교육을 강화**하고 있습니다. 가정에서도 PM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*뉴시스(2024.8.26., '전동 킥보드 1대에 함께 탄 중학생 3명, 택시 충돌') 등

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수칙

1.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(초등학교, 중학교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)
 - 어린이(13세 미만)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(10만원) 부과
2.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
 -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,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 (위반 시 범칙금 10만원)
 - 16세 이상 **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**
3. 안전모(헬멧) 착용
 -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**안전모 착용 필수** (범칙금 2만원)
4.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
 - 승차정원(1인)을 위반하여 **2인 이상 탑승 불가** (범칙금 4만원)

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육자료

			<p>재난상황 대응 매뉴얼</p>	<p>안전교육 자료실</p>
 <p>청부파일 (1) 2022-09-26</p>	 <p>청부파일 (1) 2021-05-31</p>	 <p>청부파일 (16) 2021-05-31</p>	 <p>청부파일 (1) 2021-05-31</p>	 <p>청부파일 (1) 2021-05-07</p>

○ 학교안전정보센터에 탑재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자료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유의 사항, 안전한 이용 방법 등을 교육

⇒ <https://www.schoolsafe.kr/post/view?id=2270> (교육 영상)

⇒ <https://www.schoolsafe.kr/post/view?id=1773> (설명자료)

⇒ <https://www.schoolsafe.kr/post/view?id=1772> (카드뉴스)

2024년 8월 29일

군산서흥중학교장 (직인생략)